

1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 (목적) <생략></p> <p>제2조 (적용범위) 산림용 종묘사업(산림용 종자와 묘목, 접·삽수, 배양묘 등 무성증식 개체를 포함한다)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제6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2조 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67조 내지 제70조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 (용어의 정의) <생략></p>	<p>제3조 (용어의 정의)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4조 (채종림 등의 관리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도산림환경연구소장·산림개발연구원장·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산림환경연구소장”이라 한다)과 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 (채종림 등의 지정·해제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시·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산림청장은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채종립 또는 수형목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③시·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립·수형목의 지정·해제 및 채종입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 삭제<2006. 8.21></p>	<p>제5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 (채종원·채수포의 조성)</p>	<p>제6조 (채종원·채수포의 조성)</p>
<p>①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
<p>②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하여금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 (종자결실 예찰조사) ①산림환경연구소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(이하“국유림관리소장”이라 한다)은 채종립과 채종입분에 대하여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하여 7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7조 (종자결실 예찰조사) ①시·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 (종자채취) ①채종립·채종입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산림환경연구소장·국유림관리소장이 직접 채취하고,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</p>	<p>제8조 (종자채취) ①----- -----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.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경유(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②산림환경연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채종립·채종입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를 채취할 경우 종자채취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종자채취자를 지정하여 산림환경연구소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한다)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지도·감독 하에 종자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②<삭제></p>
<p>③(생 략)</p>	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④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산림환경연구소장, 시장·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채취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 목록과 별표 3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</p>	<p>④시·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 종·조성지역·조성년도에 따라 구 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 (종자의 검사 및 품질보증표) ①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종자의 검사기관과 검사대상 종자는 다음 과 같다.</p> <p>1.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: 국립산 림품종관리센터장·국유림관리소장 채취종자, 산림환경연구소가 없는 시·도 채취 종자 및 국립산림품종 센터 채취종자</p> <p>2. 산림환경연구소 : 산림환경연구 소 직영채취 종자</p>	<p>제9조 (종자의 검사 및 품질표시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지방산림청장이 채취한 종자</p> <p>2. <u>산림환경연구소·산림개발연구원· 산림자원연구소·산림환경연구원(이 하 “산림환경연구소”라 한다) : 시· 도지사가 채취한 종자</u></p>
<p>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한 <u>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</u>에 <u>종자산 지내역</u>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②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5호 서식의 종자산 지내역</u>을 ----- -----</p>
<p>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 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<u>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</u>를 접수</p>	<p>③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종자품질 기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하는 입엽용종자감정요령에 따라 검사하며 합격종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기관에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보증표를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종자품질보증표의 색깔은 채종임분 종자는 황색, 채종립 종자는 녹색, 미검정 채종원 종자는 분홍색, 검정 채종원 종자는 청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종자산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채종립·채종임분 또는 채종원이외에서 채취한 종자는 품질기준 이상이라도 합격종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(생략)</p> <p>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보유한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묘목의 대행생산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학술목적·국제교류상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검시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(2)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-----품질표시를 종자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. -----</p> <p>---종자품질표시의 색깔은 채종원 종자는 분홍색, 채종립 종자는 녹색, 채종임분 종자는 황색으로 -----</p> <p>-----</p> <p>④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도입산 및 채종원·채종립·채종임분 이외에서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17조의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 (양묘사업과 묘목생산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묘목의 생산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·묘 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 생산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양묘사업 상황보고는 5월 31일까지,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양묘실태조사보고는 10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(신설)</p>	<p>제10조 (양묘사업과 묘목생산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생산을 지정하여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채종원·채종립·채종입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품질검사 결과 합격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----- 별지 제7호 서식(1)(2)----- -----별지 제8호 서식(1)(2) ----- -- 10월 15일까지 ----- --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묘목생산자는 양묘사업 시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업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
<p>제11조 (묘목의 검사) ①지방산림청장, 시장·군수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 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,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정묘목에 대한 검사는 묘목을 지정한 당해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묘</p>	<p>제11조 (묘목의 검사) ①----- ----- ----- ----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<u>조립용 묘목검사 통보서를</u> 묘목검사 7일전에 보내야 한다</p>	<p>----- -----<u>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를</u> ----- -----</p>
<p>③(생략)</p>	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④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<u>종자품질기준은</u> 별표 4, <u>조립용 묘목규격은</u> 별표 7과 같다. 다만,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식물분류체계상 유사한 종의 묘목을 준용한다.</p>	<p>④<u>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 시행령 ----- <u>산림용 묘목규격은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⑤<u>조립용 묘목규격의</u>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 1~3(생략)</p>	<p>⑤<u>산림용 묘목규격의</u> ----- ----- 1~3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묘목검사 방법)</p>	<p>제12조 (묘목검사 방법)</p>
<p>①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
<p>②(생략)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③<u>묘목검사원은</u>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달관조사 결과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묘목이 5%를 초과한 때에는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즉시 재선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
<p>④ <신설></p>	<p>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별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검사 요청기한까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⑤ <신설></p> <p>제13조 (묘목포장 등) ①(생략)</p> <p>②묘목검사원은 검사결과 합격한 묘목을 완전히 포장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장시에 입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 곤포수의 5%를 풀어서 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장 외부에 부착하는 품질보증표와 품질보증표의 색깔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며 품질보증표에는 검사자의 확인인을 찍어야 한다.</p> <p>제14조 (묘목의 수급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목은 검사원의 묘목검사를 받은 후에 수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고 자 하는 산림사업용 묘목</p> <p>2. 지방산림청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산림용 묘목</p> <p>제15조 (재선별의 지시 등) (생략)</p> <p>제16조 내지 제18조 <삭제></p>	<p>지 재검사 요청이 없으면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묘목검사원은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 (묘목포장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품질표시의 색깔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14조 (묘목의 수급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묘목은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 중에서 묘목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수급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 <삭제></p> <p>제16조 내지 제18조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 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</p> <p><신설></p>	<p>제19조 (재검토 기한) ----- ----- ----- 이 요령 을 ----- ----- 이 요령 의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009. 12. 1)</p> <p>①(시행일)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</p> <p>②(묘목규격에 대한 경과조치) [별표 7] 산림용묘목기준표는 2011. 1. 1.부터 시행한다.</p>

신·구별표 및 별지서식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 2] <u>종자산지구역목록표</u>						[별표 2] <u>종자산지구역목록표</u>					
산지 번호	산지구역	산지구역 위치				산지 번호	산지구역	산지구역 위치			
1-1	제주도	제주도 전역으로 제주시, 서귀포시, 남제주군, 북제주군으로 형성				1-1	제주특별자치도	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제주시, 서귀포시로 형성			
[별표 5] 양묘사업기준일람표						[별표 5] 양묘사업기준일람표					
수종별	구분	----	파종량	생림기준 및 이식본수	독묘본수	수종별	구분	----	파종량	생림기준 및 이식본수	독묘본수
갈 송	피종 이식		26.6	600	500	소나무	피종 이식		13.3	600	500
	<신설>		-	90	72		용기(2-0)		-	-	90
낙엽송	파종 이식		20.1	600	500	낙엽송	파종 이식		20.1	600	500
	<신설>		-	64	50		용기(2-0)		-	-	64
편 백	파종 이식		35.8	550	450	편 백	파종 이식		35.8	550	450
	1-1-1		-	64	45		1-1-1		-	64	45
	1-2-2		-	49	45		1-2-2		-	49	45
	<신설>		-	16	12.8		용기(2-0)		-	16	12.8
							용기(2-0)		14립/월	1.5/월	1/월

현행						개정안					
[별표7] <u>조립용목규격표</u>						[별표7] <u>산림용목규격표</u>					
수종	묘형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	수종	묘형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
		cm이상	mm이상	cm이상				cm이상	mm이상	cm이상	
가래나무	1-0	15	8.0			가래나무	1-0	15	8		
가문비나무	3-1	22	7.0	20		가문비나무	3-1	22	7	20	
	3-2	28	7.5	23			3-2	28	7	23	
가중나무	1-0	21	3.0			가중나무	1-0	21	3		
	1-1	42	8.3	25			1-1	42	8	25	
갈참나무	1-1	30	6.0			갈참나무	1-1	30	6		
감나무	접목1	45	8.0	20		감나무	접목1	45	8	20	
소나무	1-1	16	5.0	18		소나무	1-1	16	5	18	
	<신설>						용기묘 (2-0)	25	3		
거제수나무	1-0	22	2.5			거제수나무	1-0	22	2		
	1-1	40	5.0	25			1-1	40	5	25	
고료쇠나무	1-0	32	3.9			고료쇠나무	1-0	32	4		
	1-1	62	5.0				1-1	62	5		
구상나무	1-0	4	1.4			구상나무	1-0	4	1		
	2-0	6	2.0				2-0	6	2		
	2-2	18	5.0				2-2	18	5		
	2-3	22	7.0				2-3	22	7		
꿀참나무	1-0	25	4.0	23		꿀참나무	1-0	25	4	23	
	1-1	38	6.0	25			1-1	38	6	25	
낙엽송	1-0	25	3.5	18		낙엽송	1-0	25	3	18	
	1-1	35	6.0	20			1-1	35	6	20	
	<신설>						용기묘 (1-0)	20	3		플라스틱 24구 용기 (320m ² /구, φ6.4*13cm/구)
	<신설>						용기묘 (2-0)	46	6		
난티나무	1-0	20	2.5			난티나무	1-0	20	2		
	1-1	94	6.5				1-1	94	6		
노각나무	1-1	30	4.2			노각나무	1-1	30	4		
	1-1-1	58	9.0				1-1-1	58	9		
느릅나무	1-0	23	3.0			느릅나무	1-0	23	3		
		120	8.0					120	8		
느티나무	1-0	42	3.5	25		느티나무	1-0	42	3	25	
	1-1	90	7.0	27			1-1	90	7	27	
다릅나무	1-0	16	3.0			다릅나무	1-0	16	3		
	1-1	31	3.9				1-1	31	4		
단풍나무	1-0	11	2.5			단풍나무	1-0	11	2		
당단풍	1-0	11	2.5			당단풍	1-0	11	2		

현행						개정안							
수종	묘령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	수종	묘령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		
독일가문비	2-2	35	8.0	18	○ 근장은 수관폭임 분쓰기 18cm×18cm이상	독일가문비	2-2	35	8	18	○ 근장은 수관폭임 분쓰기 18cm×18cm이상		
	2-3	55	10.0	20			2-3	55	10	20			
	2-2-2	60~79	10.2	24			2-2-2	60~79	10	24			
		80이상	10.3	30			80이상	10	30				
두릅나무	1-1	50	6.8			두릅나무	1-1	50	7				
두충나무	1-0	26	3.2			두충나무	1-0	26	3				
	1-1	51	5.1				1-1	51	5				
들메나무	1-0	12	2.5			들메나무	1-0	12	2				
	1-1	30	5.0	20			1-1	30	5	20			
	1-1-1	40	7.0				1-1-1	40	7				
루브라참나무	1-0	25	5.2	20		루브라참나무	1-0	25	5	20			
	1-1	30	5.5	30			1-1	30	6	30			
리기다소나무	1-0	15	4.0	15		리기다소나무	1-0	15	4	15			
	1-1	25	6.0	18			1-1	25	6	18			
리기태다소나무	1-0	15	3.0	15		리기태다소나무	1-0	15	3	15			
	1-1	30	5.0	20			1-1	30	5	20			
마가목	1-0	22	3.2			마가목	1-0	22	3				
	1-1	35	6.2				1-1	35	6				
말채나무	1-0	44	4.3			말채나무	1-0	44	4				
	1-1	58	5.3				1-1	58	5				
물갠나무	1-0	18	5.0			물갠나무	1-0	18	5				
물오리나무	1-0	18	5.0			물오리나무	1-0	18	5				
	1-0	25	6.0	20			1-0	25	6	20			
물푸레나무	1-1	41	7.4	26		물푸레나무	1-1	41	7	26			
	1-0	58	3.9				1-0	58	4				
박달나무	1-1	70	6.7			박달나무	1-1	70	7				
	대목	70	8.0	20			대목	70	8	20			
밤나무	1-0	120	8.0 (지상30cm)	25	○ 간장: 접합부로부터의 길이	밤나무	1-0	120	8 (지상30cm)	25	○ 간장: 접합부로부터의 길이		
	1-1	저접1	50	8.0	20		○ 근원경: 접수의 지경	1-1	저접1	50	8	20	○ 근원경: 접수의 지경
		고접1	50	10.0	25		○ 접합부의 유합이 완전한 것		고접1	50	10	25	○ 접합부의 유합이 완전한 것
		유접1	45	6.0	15		○ 묘간부가 결단되지 않은 것		유접1	45	6	15	○ 묘간부가 결단되지 않은 것
백합나무	1-0	31	8.2			백합나무	1-0	삭제	8				
	1-1	48	9.3				1-1	삭제	9				
버치나아소나무	1-0	8	1.5			버치나아소나무	1-0	8	1				
	1-1	25	4.0	20			1-1	25	4	20			
복자기	1-0	19	2.9			복자기	1-0	19	3				
	1-1	24	4.5				1-1	24	4				
분비나무	3-1	18	5.0	18		분비나무	3-1	18	5	18			
	3-2	22	7.0	20			3-2	22	7	20			

현행						개정안					
수종	묘형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	수종	묘형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
		cm이상	mm이상	cm이상				cm이상	mm이상	cm이상	
사방오리나무	1-0	18	5.0			사방오리나무	1-0	18	5		
사스레나무	1-0	11	2.5			사스레나무	1-0	11	2		
	1-1	35	5.0	25			1-1	35	5	25	
산딸나무	1-0	35	3.6			산딸나무	1-0	35	4		
	1-1	44	5.5				1-1	44	5		
산수유	1-1	58	6.4			산수유	1-1	58	6		
산벚나무	1-0	28	3.5			산벚나무	1-0	28	3		
살구나무	첩1	50	6.0	25		살구나무	첩1	50	6	25	
삼나무	1-1	27	5.5	18		삼나무	1-1	27	5	18	
	1-1-1	35	7.5	20			1-1-1	35	7	20	
상수리나무	1-0	28	5.0	23		상수리나무	1-0	28	5	23	
	1-1	39	7.0				1-1	39	7		
	<신설>						용기	28	3		
	(1-0)										
세로타나뭇나무	1-0	26	2.5			세로타나뭇나무	1-0	26	2		
수원포플러	C1/1	180	11.0	20		수원포플러	C1/1	180	11	20	
스트로브잣나무	1-0	4	0.8			스트로브잣나무	1-0	4	1		
	1-1	7	2.0				1-1	7	2		
	1-2	23	6.0	20			1-2	23	6	20	
	2-0	9	2.0	17			2-0	9	2	17	
	2-1	33	7.5				2-1	33	7		
신갈나무	1-0	26	3.5	23		신갈나무	1-0	26	3	23	
	1-1	37	5.5				1-1	37	5		
아까시나무	1-0	35	5.0		근류근피가 부각되어야 함	아까시나무	1-0	35	5		근류근피가 부각되어야 함
	1-1	80	7.0	20			1-1	80	7	20	
양향철나무	C1/1	210	12.0	20		양향철나무	C1/1	210	12	20	
오동나무	분근1	70	20.0	25		오동나무	분근1	70	20	25	
	실생1	50	15.0	20			실생1	50	15	20	
	치상묘	-	6.0	20			치상묘	-	6	20	
오리나무	1-0	18	5.0	18	오리나무류는 근류근피가 부각되어야 함	오리나무	1-0	18	5	18	오리나무류는 근류근피가 부각되어야 함
웃나무	1-0	18	4.6			웃나무	1-0	18	5		
	1-1	50	7.0				1-1	50	7		
은행나무	1-0	10	3.6			은행나무	1-0	10	4		
	1-1	18	5.2				1-1	18	5		
	2-0	30	7.0	15			2-0	30	7	15	
솔나무	1-0	20	3.5	20		솔나무	1-0	20	3	20	
	1-1	21	6.1				1-1	21	6		
이태리포플러	C1/1	220	10.0	20	근원경 50cm의 직경	이태리포플러	C1/1	220	10	20	근원경 50cm의 직경
	C1/2	300	18.0	30			C1/2	300	18	30	
자작나무	1-0	40	5.0	25		자작나무	1-0	40	5	25	
	1-1	67	5.2	25			1-1	67	5	25	

현행						개정안					
수종	묘령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	수종	묘령	간장	근원경	근장	비고
잣 나무	2-0	13	3.5	15		잣 나무	2-0	13	3	15	
	3-0	18	5.0	15			3-0	18	5	15	
	2-1	16	4.5	15			2-1	16	4	15	
	2-2	22	6.0	18			2-2	22	6	18	
	2-3	32	8.0	20			2-3	32	8	20	
	2-2-3	60~79	10.4	28	○근장은 수관폭임		2-2-3	60~79	10	28	○근장은 수관폭임
견 나무		80이상	10.6	34	분뜨기 18cm×18cm이상		80이상	10	34	분뜨기 18cm×18cm이상	
	1-0	4.0	1.4			1-0	4.0	1			
	2-0	6.0	2.0			2-0	6.0	2			
	2-1	9.0	3.7			2-1	9.0	4			
	2-2	18	5.0	18		2-2	18	5	18		
	2-3	22	7.0	20		2-3	22	7	20		
졸참 나무	2-2-3	60~79	10.6	32	○근장은 수관폭임	2-2-3	60~79	11	32	○근장은 수관폭임	
		80이상	10.8	38	분뜨기 18cm×18cm이상		80이상	11	38	분뜨기 18cm×18cm이상	
	1-1	35	6.4			1-1	35	6			
	졸잎산오리나무	1-0	18	5.0		졸잎산오리나무	1-0	18	5		
	주 목	1-2	10	2.4		주 목	1-2	10	2		
		2-1	16	3.5			2-1	16	3		
쪽제비싸리, 참싸리, 쪽동백	3-2	37	6.0			3-2	37	6			
	1-0	30	4.0	15		쪽제비싸리, 참싸리	1-0	30	4	15	
	1-0	55	5.5			쪽동백	1-0	55	5		
참종 나무	1-0	15	3.1			참종 나무	1-0	15	3		
	1-1	42	7.1			1-1	42	7			
칠엽 수	1-0	22	7.0			칠엽 수	1-0	22	7		
충충 나무	1-0	45	4.9			충충 나무	1-0	45	5		
	1-1	56	5.1			1-1	56	5			
데다소나무	1-0	20	4.0	15		데다소나무	1-0	20	4	15	
	1-1	27	6.0			1-1	27	6			
편 백	1-1	27	4.5	18		편 백	1-1	27	4	18	
	1-1-1	35	7.0	20		1-1-1	35	7	20		
	1-2-2	70~89	10.2	28	○근장은 수관폭임	1-2-2	70~89	10	28	○근장은 수관폭임	
		90이상	10.3	34	분뜨기 18cm×18cm이상		90이상	10	34	분뜨기 18cm×18cm이상	
<신설>						용기 (2-0)	33	4		플라스틱 28구 용기 (300ml/구, φ6.4*13cm/구)	
피 나무	1-0	25	7.0	25		피 나무	1-0	25	7	25	
	1-1	40	9.6			1-1	40	10			
해 송	1-1	16	6.0	18		해 송	1-1	16	6	18	
	1-0	50	5.0			1-0	50	5			
헛개 나무	C1/1	150	10.0	20		헛개 나무	C1/1	150	10	20	
	C1/2	180	15.0	25		C1/2	180	15	25		
호두 나무	1-0	15	8.0	20		호두 나무	1-0	15	8	20	
	접1	15	8.0	20		접1	15	8	20		
화 백	1-0	6	1.0			화 백	1-0	6	1		
	1-1	27	4.5	18		1-1	27	4	18		
황 백 나무	1-0	21	3.9			황 백 나무	1-0	21	4		
	1-1	82	6.1			1-1	82	6			
황철 나무	C1/1	210	12.0			황철 나무	C1/1	210	12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 8] 관포당및속당묘목본수표						[별표 8] 관포당및속당묘목본수표					
수 종	묘 령	관 포 당		속 당 본 수	비 고	수 종	묘 령	관 포 당		속 당 본 수	비 고
		본 수	속 수					본 수	속 수		
감 나 무	접목묘	200	10	20		감 나 무	접목1년	200	10	20	
강 송	2	1,000	50	20		소 나 무	1-1	1,000	50	20	
거 계 수	1	1,500	75	20		거 계 수	1-0	1,500	75	20	
낙 열 송	2	500	25	20		낙 열 송	1-1	500	25	20	
느 티 나 무	1 <신설>	1,500	75	20		느 티 나 무	1-0 1-1	1,500 1,000	75 50	20 20	
대 추 나 무	분얼묘	100	10	10		대 추 나 무	점목·분얼 묘	100	10	10	
독일가문비, 가문비나무	4	500	25	20		독일가문비, 가문비나무	2-2	500	25	20	
들 메 나 무	1	1,000	50	20		들 메 나 무	1-0	1,000	50	20	
루브라참나무	1	1,000	50	20		루브라참나무	1-0	1,000	50	20	
리기다소나무	2	1,000	50	20		리기다소나무	1-1	1,000	50	20	
	1(성)	2,000	100	20			1-0(성)	2,000	100	20	
리기테다소나무	2	800	40	20		리기테다소나무	1-1	800	40	20	
	1(성)	1,500	75	20			1-0(성)	1,500	75	20	
물 푸 레 나 무	1 <신설>	1,000	50	20		물 푸 레 나 무	1-0 1-1	1,000 500	50 25	20 20	
박 달 나 무	1	1,500	75	20		박 달 나 무	1-0	1,500	75	20	
밤 나 무	저접고접	100	10	20		밤 나 무	점목1년	100	10	20	
버치니아소나무	2	1,000	50	20		버치니아소나무	1-1	1,000	50	20	
분 비 나 무	5	400	20	20		분 비 나 무	2-3	400	20	20	
사스레 나무	1	1,500	75	20		사스레 나무	1-0	1,500	75	20	
살 구 나 무	점목묘	200	10	20		살 구 나 무	점목1년	200	10	20	
	유묘	10,000	100	100			1-0 (대목)	1,000	50	20	
삼 나 무	2	1,000	50	20		삼 나 무	1-1	1,000	50	20	
상수리, 굴참, 신갈	1	1,000	50	20		상수리, 굴참, 신갈	1-0	1,000	50	20	
	<신설>						1-1	500	25	20	

현행					개정안						
수종	묘형	근포당		속당본수	비고	수종		근포당		속당본수	비고
		본수	속수					본수	속수		
스트로브잣나무	3	1,000	50	20		스트로브잣나무	2-1	1,000	50	20	
	4	500	25	20			2-2	500	25	20	
아까시	1	1,000	50	20		아까시	1-0	1,000	50	20	
옴나무	1	1,500	75	20		옴나무	1-0	1,500	75	20	
오동나무	분근,실생	50	5	10		오동나무	분근,실생 (1년)	50	5	10	
오리나무류	1	2,000	100	20		오리나무류	1-0	2,000	100	20	
옻나무	1	1,000	50	20		옻나무	1-0	1,000	50	20	
자작나무	1	1,000	50	20		자작나무	1-0	1,000	50	20	
잣나무	<신설>					잣나무	1-1	500	50	20	
	2	2,000	100	20	2-0		2,000	100	20		
	3	1,000	50	20	2-1		1,000	50	20		
	4	500	25	20	2-2		500	25	20		
전나무	4	500	25	20		전나무	2-2	500	25	20	
	5	400	20	20	2-3		400	20	20		
쪽제비나무,참싸리	1-0	2,000	100	20		쪽제비나무,참싸리	1-0	2,000	100	20	
테다소나무	2	800	40	20		테다소나무	1-1	800	40	20	
	1(성)	1,500	75	20	1-0(성)		1,500	75	20		
련백	2	1,000	50	20		련백	1-1	1,000	50	20	
포플러류	C1/1	80	8	10		포플러류	C1/1	80	8	10	
	C1/2	50	5	10	C1/2		50	5	10		
피나무	1	1,500	75	20		피나무	1-0	1,500	75	20	
호두나무	1	500	25	20		호두나무	1-0	500	25	20	
	접목묘	300	15	20	접목묘		300	15	20		
해송	2	1,000	50	20		해송	1-1	1,000	50	20	
화백	2	1,000	50	20		화백	1-1	1,000	50	20	
백합나무	1-0	300	15	20		백합나무	1-0	300	15	20	
	1-1	100	10	10	1-1		100	10	10		

현 행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
[별지 제1호 서식] 채종립·수형목자정현황보고서										[별지 제]호 서식] 채종립·수형목 지정 채종일분 신정 현황보고서 해제										
구분	지정 번호	지정 년월일	소유별	지 정 내 용					구분	지정 번호	지정 년월일	지정 기간	소유별	지 선 해	정 정 제	내 용				
				면 적	수 종	소 재 지	본 수	수 형								구 역 적	수 종	소 재 지	본 수	수 형
				ha			본	년					ha			본	년			
[별지 제2호 서식] 채종원·채수모조성실적보고										[별지 제2호 서식] 채종원·채수모조성실적보고										
구분	수종	소재지	조성실적		구분	조성 년월일	수종	소재지	조성실적		총자(적·삼수) 채취가능 년도									
			면 적	본 수					면 적	본 수										
			ha	본				ha	본											
[별지 제3호 서식] 채종립등종자결실에활조사보고										[별지 제3호 서식] 채종립등종자결실에활조사보고										
구분	수종	결실품종	채취가능량	구분	산지번호	조사개소	수종	품종	채취가능량											
										kg	kg									
			kg						kg											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		
[별지 제4호 서식]						[별지 제4호 서식]							
산림용종자채취결과보고						산림용종자채취결과보고							
구분	소개지	수종	계획량	채취실적	채취기간	구분	산지번호	산지구역	채취장소	수종	계획량	채취량	채취기간
			kg	kg							kg	kg	
[별지 제5호 서식]						[별지 제5호 서식]							
종자산지내역						종자산지내역							
1. 종자생산원	채종원 · 채종립 · 채종입분					1. 종자생산원	채종원 · 채종립 · 채종입분						
2. 채취장소	(산지번호: -)					2. 채취장소	(산지번호: -)						
3. 수종명						3. 수종명							
4. 수량						4. 수량							
(채종원조성년도)						(채종원조성년도)							
5. 종자채취일자						5. 종자채취일자							
6. 수량						6. 수량							
7. 기타						7. 기타							
20 년 월 일						20 년 월 일							
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개발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시장 · 군수 국유림관리소장						00 지방산림청장 (인)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(인) 00 시 · 도지사 (인) 00 시장 · 군수 (인)							
[별지 제6호 서식]						[별지 제6호 서식(1)]							
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					처리기간	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					처리기간		
					30 일						30 일		
신청인	①성명			②주민등록번호	~	신청인	①성명			②주민등록번호	~		
	③주소						③주소						
④수종	⑤검사신청수량	⑥채취기간	⑦생산지	⑧보관장소	⑨검사목적	④증자공급량	⑤산지번호	⑥산지구역	⑦수종	⑧채취장소	⑨검사목적		
	kg						kg						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.						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.							
20 . . . 신청인 (인)						20 . . . 신청인 (인)							
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개발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						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00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							
구비서류 : 종자산지내역 1부(별지 제5호 서식)					수수료	구비서류 : 종자산지내역 1부(별지 제5호 서식)					수수료		
					원						원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설></p>	<p>(별지 제6호 서식(2)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r> <td colspan="10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림용종자검사결과통보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성 명</td> <td colspan="2"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주민등록 번호</td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 colspan="8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 주 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④ 종자 공급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⑤ 산지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⑥ 산지 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⑦ 수종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⑧ 품질기준(%) 순량을 발아율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⑨ 검사결과(%) 순량을 발아율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⑩ 판정 (합격·불합격)</td> </tr> <tr> <td style="height: 100px;"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검사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(인) 00 산림환경연구소장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0 0 귀하</p> <p>붙임서류 : 종자품질표시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0호 서식)</p>	산림용종자검사결과통보서										신 청 인		① 성 명			② 주민등록 번호	~						③ 주 소								④ 종자 공급원	⑤ 산지 번호	⑥ 산지 구역	⑦ 수종	⑧ 품질기준(%) 순량을 발아율		⑨ 검사결과(%) 순량을 발아율		⑩ 판정 (합격·불합격)											
산림용종자검사결과통보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인		① 성 명			② 주민등록 번호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③ 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종자 공급원	⑤ 산지 번호	⑥ 산지 구역	⑦ 수종	⑧ 품질기준(%) 순량을 발아율		⑨ 검사결과(%) 순량을 발아율		⑩ 판정 (합격·불합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
[별지 제7호 서식(1)] (1. 표 면)											[별지 제7호 서식(1)] (1. 표 면)										
양묘사업상황보고 1. 총괄 (단위: ha, 천본)											양묘사업상황보고 1. 총괄 (단위: ha, 천본)										
① 구분	② 주체 별	③ 중앙 계획	지 정 내 역			⑦ 생산 지수	생산계획분수				⑥ 합계	생산계획분수									
			④ 소개	⑤ 중앙 계획분	⑥ 도자체 계획분		⑧ 계	⑨ 중앙 계획분	⑩ 도자체 계획분	⑪ 기타		대형생산지정		⑫ 기타							
성묘	계																				
	양묘임자 (개인)																				
	양묘임자 (법인)																				
	산림조합																				
	환경연구소 지방청																				
유묘	계																				
	양묘임자 (개인)																				
	양묘임자 (법인)																				
	산림조합																				
	환경연구소 지방청		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7호 서식(2)] (2. 이 면)											[별지 제7호 서식(2)] (2. 이 면)										
2. 성·유묘별, 주체별 : (단위: 천본)											2. 성·유묘별, 주체별 : (단위: 천본)										
① 구분	② 수종	③ 묘령	④ 중앙 계획	지 정 내 역			⑤ 생산 지수	생산계획분수				⑥ 합계	생산계획분수								
				⑧ 계	⑨ 중앙 계획	⑩ 도자체 계획		⑪ 계	⑫ 중앙 계획분	⑬ 도자체 계획분	⑭ 기타		대형생산지정		⑮ 기타						
성묘	계																				
	경제수																				
	특용수																				
	유실수																				
	사방수																				
유묘	계																				
	경제수																				
	바이오																				
	특용수																				
	유실수																				
사방수	계																				
	경제수																				
	바이오																				
	특용수																				
	유실수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
[별지 제8호 서식] 양묘실태조사보고 1. 총괄 (단위: 천본)							(별지 제8호서식(1)) (1. 표 면) 양묘실태조사보고 1. 총괄 (단위: 천본)														
① 구분	② 수종	③ 요령	생 산 가 능 량				⑤ 증감 (④-③)	① 구분	② 주체별	생 산 계 획				생 산 실 적							
			④ 계	⑤ 중앙 계획분	⑥ 도·지 계획분	⑦ 타				합계	도 중 앙	도 지 방	비 점	합계	④ 계	중 앙	도 지 방	비 점			
계							계														
경제수							양묘업자 (개인)														
특용수							양묘업자 (법인)														
유실수							산림조합														
사방수							한강안주소														
							지방청														
							계														
							양묘업자 (개인)														
							양묘업자 (법인)														
							산림조합														
							한강안주소														
							지방청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(별지 제8호 서식(2)) (2. 이 면) 양묘실태조사보고 (단위: 천본)														
① 구분	② 수종	③ 요령	④ 종자 공급원	시 업 량	생 산 계 획	⑤ 비 지 정	생 산 실 적				⑦ 증 감 (⑥-⑤)										
							합계	⑥ 계	중 앙	자 체		비 점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		
경제수	소계																				
바이오	소계																				
특용수	소계																				
유실수	소계																				
사방수	소계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9호 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5">산림용묘목검사예정기일통보서</th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① 수종별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② 묘형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③ 수요처 (조림지)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④ 수량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⑤ 검사 예정일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td> </tr> </table>	산림용묘목검사예정기일통보서					① 수종별	② 묘형	③ 수요처 (조림지)	④ 수량	⑤ 검사 예정일시				본		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<p>[별지 제9호 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5">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</th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① 수종별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② 묘형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③ 수요처 (조림지)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④ 수량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⑤ 검사 예정일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본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td> </tr> </table>	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					① 수종별	② 묘형	③ 수요처 (조림지)	④ 수량	⑤ 검사 예정일시				본		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림용묘목검사예정기일통보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수종별	② 묘형	③ 수요처 (조림지)	④ 수량	⑤ 검사 예정일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수종별	② 묘형	③ 수요처 (조림지)	④ 수량	⑤ 검사 예정일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11호 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5">산림용묘목검사통지서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5%;">생 산 자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① 성 명</td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 30%;">② 주민등록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/tr> <tr> <td>③ 주 소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">재 선 별 통 지 서</td> <td>④ 모집단번호</td> <td>⑤ 재검사일</td> <td>2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⑥ 수 종 및 묘형</td> <td rowspan="3">⑦ 수 량</td> <td></td> <td>본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본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본</td> </tr> <tr> <td>⑧ 사 유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 <p>위와 같이 재선별 지시하오니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묘목의 이동을 금지하고 재선별 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산림용 묘목검사원 소 속 : 직성명 : (인)</p> </td> </tr> </table>	산림용묘목검사통지서					생 산 자	① 성 명	② 주민등록 번호			③ 주 소					재 선 별 통 지 서	④ 모집단번호	⑤ 재검사일	20		⑥ 수 종 및 묘형	⑦ 수 량		본		본		본	⑧ 사 유					<p>위와 같이 재선별 지시하오니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묘목의 이동을 금지하고 재선별 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산림용 묘목검사원 소 속 : 직성명 : (인)</p>					<p>[별지 제11호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colspan="5">산림용묘목재선별통지서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idth: 5%;">생 산 자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① 성 명</td> <td colspan="2" style="width: 30%;">② 주민등록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</td> </tr> <tr> <td>③ 주 소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">재 선 별 통 지 서</td> <td>④ 모집단번호</td> <td>⑤ 재검사 요청기한</td> <td>2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⑥ 수 종 및 묘형</td> <td rowspan="3">⑦ 수 량</td> <td></td> <td>본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본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본</td> </tr> <tr> <td>⑧ 사 유</td> <td colspan="4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 <p>위와 같이 묘목 재선별 통지하오니 재선별 후 위 기한까지 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산림용 묘목검사원 소 속 : 직성명 : (인)</p> 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 <p>위 재검사 요청 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니다.</p> </td> </tr> </table>	산림용묘목재선별통지서					생 산 자	① 성 명	② 주민등록 번호			③ 주 소					재 선 별 통 지 서	④ 모집단번호	⑤ 재검사 요청기한	20		⑥ 수 종 및 묘형	⑦ 수 량		본		본		본	⑧ 사 유					<p>위와 같이 묘목 재선별 통지하오니 재선별 후 위 기한까지 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산림용 묘목검사원 소 속 : 직성명 : (인)</p>					<p>위 재검사 요청 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니다.</p>				
산림용묘목검사통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 산 자	① 성 명	② 주민등록 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 선 별 통 지 서	④ 모집단번호	⑤ 재검사일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⑥ 수 종 및 묘형	⑦ 수 량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사 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위와 같이 재선별 지시하오니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묘목의 이동을 금지하고 재선별 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산림용 묘목검사원 소 속 : 직성명 : (인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산림용묘목재선별통지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 산 자	① 성 명	② 주민등록 번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 선 별 통 지 서	④ 모집단번호	⑤ 재검사 요청기한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⑥ 수 종 및 묘형	⑦ 수 량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사 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위와 같이 묘목 재선별 통지하오니 재선별 후 위 기한까지 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산림용 묘목검사원 소 속 : 직성명 : (인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위 재검사 요청 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